

후생연금보험 · 건강보험 제도 안내

후생연금보험 · 건강보험의 가입은
종업원 여러분의 생활을 지탱합니다.



가입 수속,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연금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日本年金機構

検索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https://www.nenkin.go.jp/>

일본연금기구는 공적 연금의 운영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입 의무에 대하여

아래 사업소는 후생연금보험 · 건강보험 가입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강제 적용 사업소)

모든 법인 사업소
(피보험자 1명 이상)



개인 사업소
(상시 종업원 5명 이상을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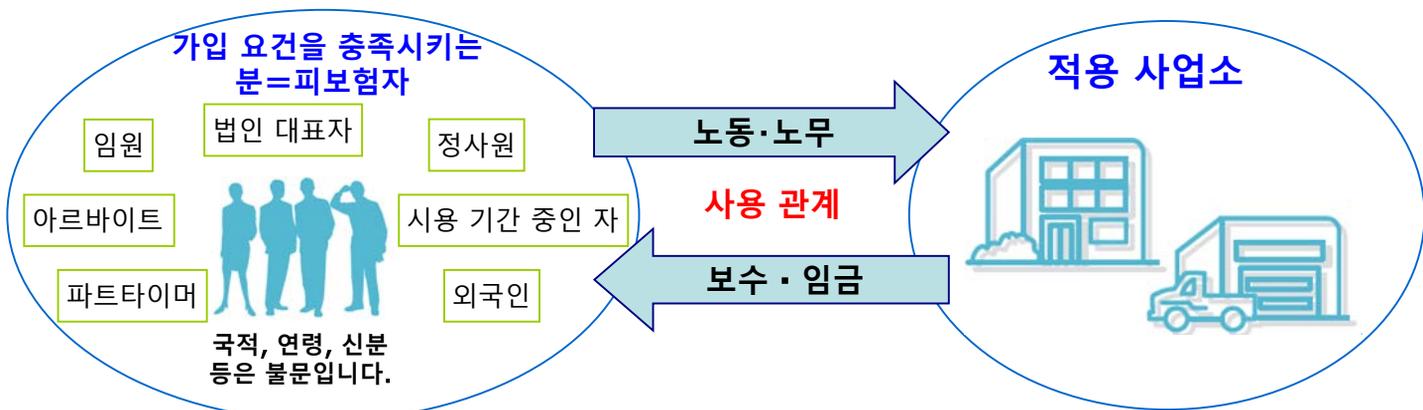


※ 법인 사업소 중 학교법인 사업소는 사립학교 교직원 공제제도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 5명 이상 개인 사업소인 경우에도 서비스업 중 일부, 농림업, 수산업, 축산업, 법무 등 사업소는 강제 적용 사업소에서 제외됩니다.
강제 적용 사업소 이외 사업소인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후생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적용 사업소)

피보험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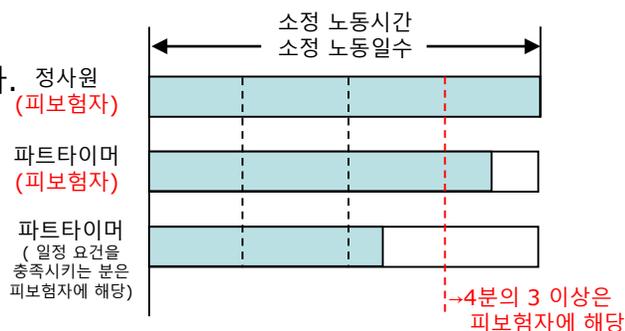
후생연금보험 · 건강보험에서는 적용 사업소 단위가 회사(사업소)입니다. 해당 사업소에서 사용되는 인원은 모두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 후생연금보험 가입 기간은 원칙적으로 70 세까지입니다.



후생연금보험 · 건강보험의 가입 요건

정사원, 법인 대표자, 임원 등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정사원 (피보험자)
파트타이머 ·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서도 1주일의 소정 노동시간 및 1개월의 소정 노동일수가 동일한 사업소에서 마찬가지로 업무에 종사하는 정사원의 4분의 3 이상인 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파트타이머 (피보험자)
또한 정사원의 4분의 3 미만인 경우에도 1주일의 소정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파트타이머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피보험자에 해당)



연금 수급자를 고용한 경우

70 세 미만으로 노령 후생연금(특별 지급을 포함합니다)을 수급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재직 중의 노령 후생연금은 급여, 상여금, 연금에서 산출되는 1개월당 합계 수입에 따라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국적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사용 기간 중의 사회보험 취급

법률상의 고용계약이나 본인의 동의와는 관계 없이,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사용 기간의 당초부터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가입 수속

후생연금보험 ·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사업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가 가입하는 경우

신규 적용 신고



피보험자로서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



피보험자 중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이동) 신고

※ 신고 방법의 상세사항, 필요 서류 등은 연금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서 용지는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nkin.go.jp/>

후생연금보험의 급부

후생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고령이 되었을 때,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했을 때에 청구하시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이 되었을 때 <노령 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 기존 가입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노령 기초연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노령 후생연금이 지급됩니다.

- ⊖ 65세 이상(수급 시기를 60세로 앞당기거나 또는 66세 이후로 늦추어서 수급 가능)
- ⊖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이 한 달 이상 있다.
- ⊗ 노령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데 필요한 자격 기간이 있다.

또한 아래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은 60세에서 65세까지사이에 특별 지급 노령 후생연금이 지급됩니다.

(생년월일 · 성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 ⊖ 60세 이상
- ⊖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이 1년 이상 있다.
- ⊗ 노령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데 필요한 자격 기간이 있다.

60세	65세
특별 지급 노령 후생연금	노령 후생연금
	노령 기초연금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 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 초진일 (병원에서 처음으로 진료 받은 날)이 있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비율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기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 후생연금	장애등급 1~2 급 장애 후생연금과 장애 기초연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장애 기초연금	
장애 후생연금	장애등급 3 급 장애 후생연금만 지급됩니다.
장애 수당금	장애등급 3 급보다 가벼운 장애 일시금으로서 장애 수당금이 지급됩니다.

사망했을 때 <유족 후생연금>

후생연금보험에 가입 중인 분이 사망했을 때(가입 중의 상병으로 인해 초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를 포함한다), 사망한 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 후생연금이 지급됩니다

※ 일정 비율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기간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유족 후생연금이 지급되는 유족 유족 우선 순위가 높은 분 (연령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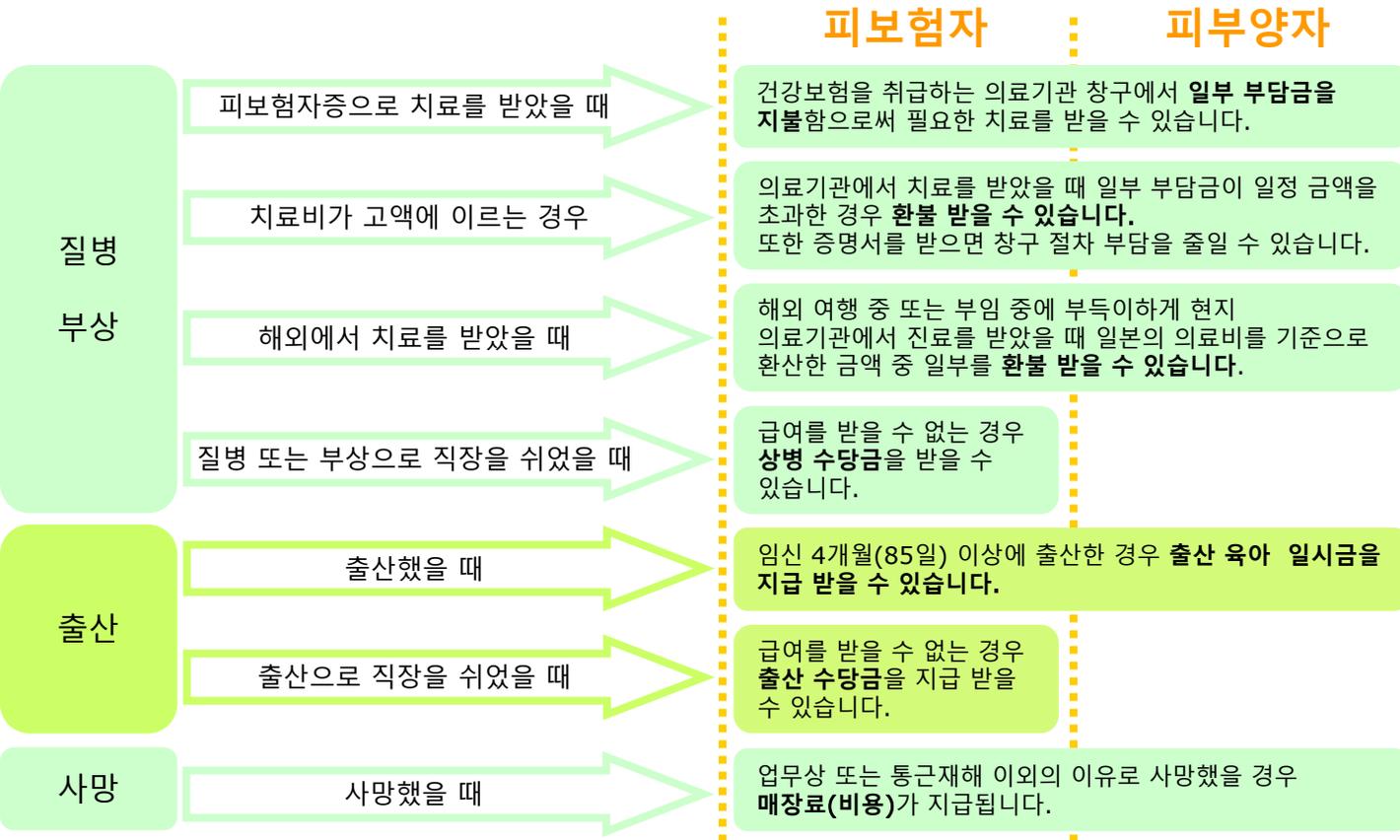
- 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유족 기초 연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연령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그밖의 유족

유족 후생연금	유족 후생연금
유족 기초연금	

건강보험 급부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와 그 가족(피부양자)이 질병이나 부상(업무상 또는 통근재해를 제외)을 했을 경우에 신청하시면 의료 급부, 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의 급부를 받자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의 급부 신청 및 상담은 전국건강보험협회의 각 도도부현 지부에 문의해 주십시오.

급부 내용 또는 신청서·수속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은 전국건강보험협회 홈페이지(<https://www.kyoukaikenpo.or.jp/>)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꼭 열람해 주십시오.

보험료 계산 방법

후생연금보험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표준 보수월액에 아래 보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표준 상여금액에 매월 보험료와 같은 보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표준 보수월액

- 후생연금보험
1급(88,000엔)~32급(650,000엔)
- 전국건강보험협회 관장 건강보험
1급(58,000엔)~50급(1,390,000엔)

■ 표준 상여금액

상여금 등 지급 금액에서 1,000 엔 미만을 절사한 금액

■ 보험 요율 (보험 요율은 금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생연금보험
1000분의 183.00
- 전국건강보험협회 관장 건강보험
각 도도부현별로 규정이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전국건강보험 협회의 각 도도부현 지부에 문의해 주십시오.
- 어린이·자녀양육 출연금
1000분의 3.6(전액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주가 일괄하여 연금사무소에 납부합니다. 또한 어린이·자녀양육 출연금은 아동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로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피보험자 부담은 없습니다.)

상세 사항은 연금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